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25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윤준병 · 박지원 · 어기구
임호선 · 주철현 · 문금주
문대림 · 이원택 · 서삼석
임미애 · 송옥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등).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를 “제1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14조제2항제1호 · 제2호</u>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u>제14조제2항제1호</u>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신 설>	제30조(과태료) ① <u>제1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u>
	2. <u>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u>

<u><신 설></u> <u><신 설></u> <u>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u>	<u>자</u> <u>3.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u> <u>4.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u> <u>5.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④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u> <u><삭 제></u>
---	---

<u>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u> <u>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u> <u>3.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u> <u>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u>	<u><삭 제></u>
---	---------------------------